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3
----------	-----

2016. 5. 4.(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4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4월 27일

-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안 제2조제5호)
- 증서의 형태와 규격 등은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명예도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부적격자가 명예도민으로 선정될 경우 대외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심의와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6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4월 1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3
----------	-----

제출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도민으로 위촉(안 제2조제5호)
- 증서의 형태와 규격 등은 도지사가 정함(안 제5조제1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를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여대상)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
3.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도, 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5.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증서수여) ① 명예도민증서의 형태와 규격, 문안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u>수여조례</u>	<u>수여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u>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u> (이하 “<u>명예도민증서</u>” 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u>----- ----- -----</p>
<p>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u>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u> 2. <u>장학재단 설립운영등 도민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u> 3. <u>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u> 	<p>제2조(수여대상)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u>명예도민증서</u>” 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u>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 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u> 2. <u>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도민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u> 3. <u>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u>

현 행	개 정 안
<p>4.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중도, 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p> <p>5. 도, 시·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온 자</p> <p>제5조(증서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② 명예도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4. 충청북도 소재 각급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자중도, 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p> <p>5.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p> <p>제5조(증서수여) ① 명예도민증서의 형태와 규격, 문안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p> <p>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p>